

보도자료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02-2634-4331/ homelessact@gmail.com

발신 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공감,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산인권센터,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홈리스행동

수신 언론(사회, 사진부)

담당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날짜 2020. 3. 7.

제목 보도자료_“위기 속 민낯 드러낸 노숙인 복지”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2.24. 경기도 수원시 소재 M 노숙인자활시설*은 “”코로나 19”에 대한 비상공지”를 통해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시는 분은 당회사와 협의하여 숙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시설 측은 동 조치가 시청의 공문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노숙인복지법 제16조)
3. 홈리스행동이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공지를 규정한 수원시나 복지부 차원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M시설의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을 빌미로 입소인의 주거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조치이자, 우열을 정할 수 없이 입소생활인에게 필수적인 ‘주거’와 ‘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폭력적 조치입니다.
4.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퇴소한 입소인은 3명이며, 이들 중 진정을 제기하는 피해자는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퇴소하게 될 경우 의료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시설 측의 방침은 현재 입소해 있는 10여명의 다른 입소인에게 일과 주거의 선택을 강제하는 폭력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5. 이에, 해당 시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위기 속 민낯 드러낸 노숙인 복지”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 주최: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공감,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다산인권센터,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흠리스행동

[순서]

- ❖ 발언1. 진정 취지
사회 : 황성철 (흠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 ❖ 발언2. 피해자 발언
/ OOO (M자활시설 퇴소자)
*** 신변보호 위해 보도 시 <비실명-모자이크> 요망**
 - ❖ 발언3.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노숙인지원정책의 문제점
/ 형진 (흠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 연대발언1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 연대발언2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진정서 접수**
-

국가인권위는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M 노숙인 자활시설의 인권침해 중단 및 긴급구제를 결정하라

우리는 오늘 ‘직장생활인의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수원시 M 노숙인자활시설을 규탄하고, 아직 시설에 남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제를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

노숙인복지법에서는 노숙인자활시설이 입소자가 머무는 동안,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하는 등 주거의 일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M 자활시설은 무책임하게도 감염 예방을 구실로 시설생활인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지난 2월 24일 시설생활인에게는 외출을, 직장생활인에게는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생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생활인의 주거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노숙인복지법 21조의 금지행위에 속한다. 특히 자활시설 입소생활인이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주거’와 ‘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그리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직장생활인의 감염을 우려한 조치였다면, 그들이 개인 예방을 더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마스크와 휴대용 손 소독제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직장생활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왜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은 문제 삼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진정인은 2월 초에 취업을 했고,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을 시설 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인이 퇴거 당한지 나흘만인 2월 28일, 시설 측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로 퇴소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는 노숙인복지법 상의 퇴소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적이며, 진정인을 자진퇴소로 처리하려는 시설 측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내몰려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진정인은 퇴소를 선택할 수 없다. 퇴소가 처리되면 의료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원시청 또한 책임이 있다. 시청은 M 자활시설의 직장생활인이 시설에서 출입을 제한당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에도 ‘시설 내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면피용 답변만 뱉어냈다. 이 같은 답변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을 한 번 더 체념하게 만들뿐이다. 결국 시청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정인에게 한 달간 임시주거비지원을 했지만, 이는 노숙인 지원주체인 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에 M 자활시설에 남아있는 입소인을 위한 긴급구제를 촉구한다. M 자활시설의 입소자는 3월 5일 기준 16명이다.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쫓긴 입소인은 진정인을 포함해 3명이며, 아직 13명이 시설에 남아있다. 시설에 남은 다른 입소인에게 일과 주거 중 하나의 선택을 강제하는 폭력은 ‘노숙인 등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 자활시설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중지를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원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감염 예방 빌미로 직장생활인 퇴거하는 M자활시설 규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자행되는 노숙인 인권침해 조사하라!
인권위는 M자활시설 입소생활자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하라!

2020년 3월 9일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취지

1. 피진정인 *** ****의 진정인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진정인의 주거권, 신체의 자유(외출·외박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권,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피진정인 ****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수원시장 및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불합리한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 *** (이하 '진정인'이라 약칭함)은 노숙인자활시설인 피진정인 *** **** (이하 '피진정인 시설'이라 약칭함)에 2019. 10. 말경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2020. 2. 25.경 피진정인으로부터 문자와 구두로 직장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시설 출입금지를 통보받아 갑자기 주거를 상실하였습니다. 진정인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인권단체로서 진정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제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으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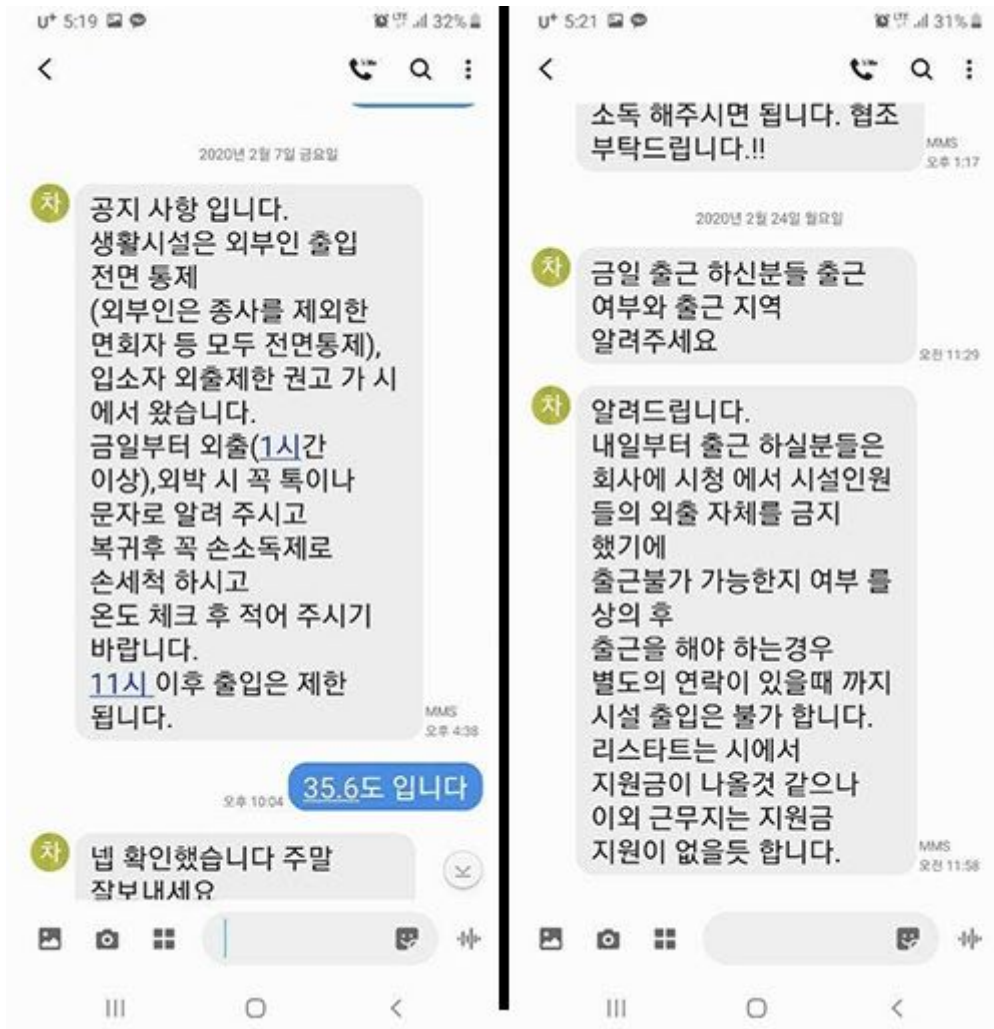
나. 피진정인 시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라고 약칭함)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자활시설로서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로서,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조사대상 보호시설에 해당하며, 2020. 3. 5. 기준으로 입소인원 1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피진정인 수원시장,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복지법 제3조, 제10조에 의하여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제15조에 의하여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되,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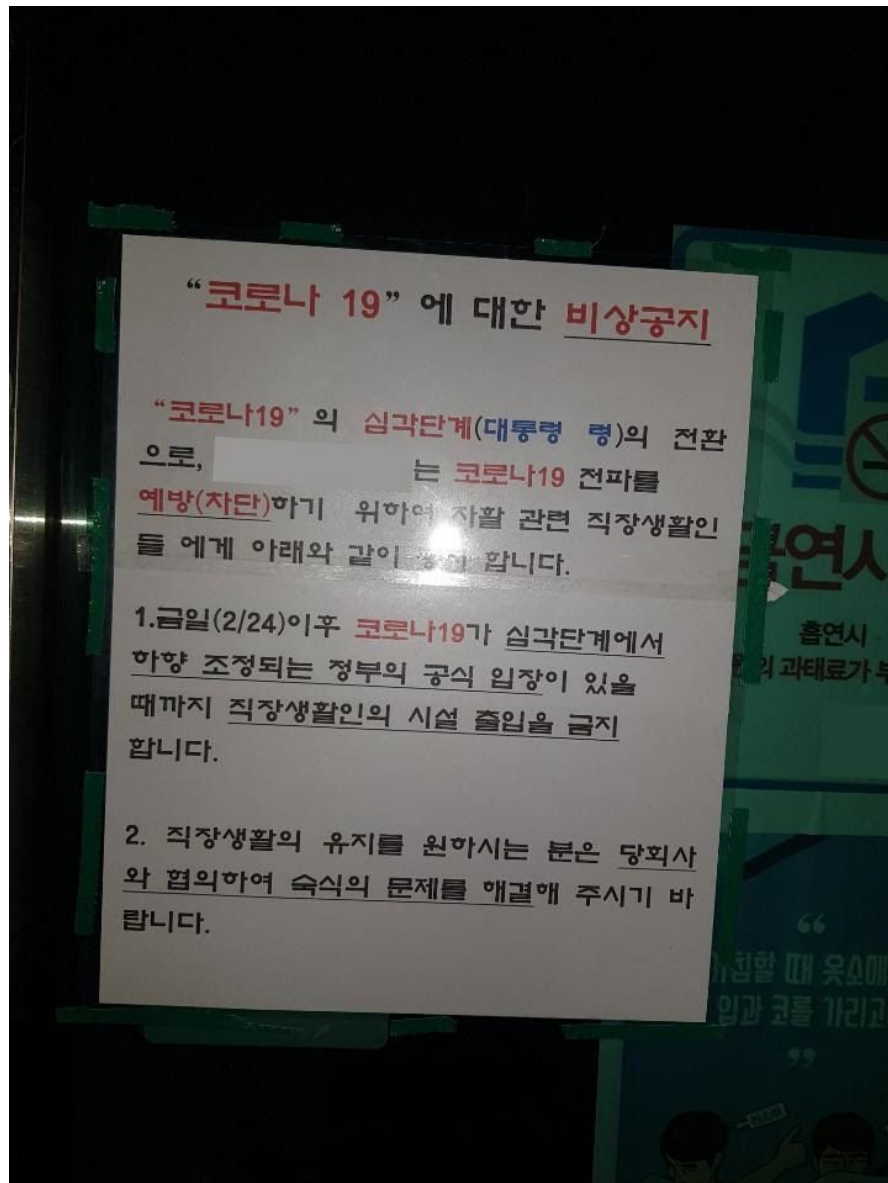
2. 사건의 경위

가. 진정인은 2019. 10. 말경 수원시 소재 노숙인자활 시설인 피진정인 시설에 입소하여 2020. 2. 경부터 취직을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설관계자인 *** 복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 시설관계자인 *** 복지사는 2020. 2. 24경 진정인에게 문자로 “내일부터 (수원)시청에서 시설인원들의 외출 자체를 금지했기에 회사에 출근불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 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시설 출입은 불가합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리스타트 이외 근무지는 지원금 지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또한 피진정인 시설은 출입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상공지문을 부착하여,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회사와 협의하여 숙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시설로부터 당장 내일부터 직장을 그만두거나 시설에서 나가라는 선택을 강요당하였고, 자활하기 위하여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인은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하여 시설 출입을 금지 당하였고, 하루아침에 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진정인은 수원시청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문의한 바, 담당 주무관은 피진정인 시설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사실은 없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관 결정시 조치할 사항으로 권고사항만 하달하였을 뿐이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시설의 출입금지 조치는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업) 권고_수원시 사회복지과
02.24

○ 권고사항 : 20.02.24.(월) ~ 진정 시까지 휴관(업)

○ 휴관(업) 결정 시 조치할 사항

- 참여자(자활근로), 자활상담 대기자, 생활시설(이용시설) 이용 및 입소를 위한 대면상담 대기자 사전 안내 철저(전화, 문자 안내 등)
- 시설장 정 위치근무(비상연락 체계유지), 종사자 정상근무(시설관리, 민원처리 등), 해외여행 또는 출장 자제(가족포함)

○ 조치결과 회신 : 담당 공무원 2020.02.24.(월) 18시 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임시휴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불참하게 된 경우, 본인에 귀책사유가 없는 공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휴업 기간 일당에 준하는 자활급여 지급

☞ 자활급여 지급(실비 미지급, 주차연차수당 지급)

※ 시설 운영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유선 등 연락 조치 요망

바. 피진정인 *** ****의 취업현황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인 외에 자활근로 2명, 일용직 7명, 비정규직 7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다른 입소자들도 노동할 권리와 자활시설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이 강요되는 상황이며,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다른 입소자들도 자활시설에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 *** ***** 입소자 현황(제출일 2020. 3. 5.기준)

*** ***** 입소 현황[입소인원 16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취업현황	건강상태
1	문**	남	20	자활근로	양호
2	김**	남	30	자활근로	양호
3	장**	남	40	일용직	양호
4	황**	남	40	비정규직(물류)	양호
5	이**	남	30	비정규직(물류)	양호
6	조**	남	30	비정규직(택배)	양호
7	김**	남	40	일용직	양호
8	김**	남	40	일용직	양호
9	김**	남	40	일용직	양호
10	이**	남	20	비정규직(영통도서관)	양호
11	김**	남	40	일용직	양호
12	이**	남	30	일용직	양호
13	송**	남	20	비정규직(물류)	양호
14	정**	남	50	비정규직(활동보조인)	양호
15	조**	남	50	일용직	양호
16	정**	남	20	비정규직(물류)	양호

사. 또한 진정인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서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피진정인 시설에서 퇴소처리가 되면 의료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3.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 진정인은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할 권리, 신체의 자유(외출·외박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노숙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와 사회복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피진정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복지시설로서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노숙인복지법 제21조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노숙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라. 특히 자발적인 퇴소가 아닌, 강제퇴소의 경우, 노숙인복지법 제1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서 강제퇴소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시장 등에게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시장 등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 등에게 통보하면 시장 등이 입소시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생활인은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 생활인에게 퇴소의 사유를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생활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마. 피진정인 시설이 2020. 2. 25.경 진정인에 대하여 숙식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노숙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생활인에 대한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강압적으로 시설에서 퇴소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바.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갑자기 주거를 잃고,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제공받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제공과 절차적 참여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인권을 침해당하였고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 긴급구제의 필요성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는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이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진정인은 직장을 유지하려면 시설출입이 금지된다는 부당한 사유로 출입을 제한당하고 있고, 숙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시설에서 퇴소처리가 되면, 기존에 지원받던 의료지원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 또한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입소자들 역시 여전히 부당하게 시설출입금지라는 조치로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 자활시설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 시설의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중지를 권고할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 또한 피진정인 수원시장 및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불합리한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가. 최근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서 인권은 가장 앞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정부들이 사람들의 삶에 가져올 그러한 조치들의 부정적일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경제적으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던 이들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조치들의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에게 부당한 인권침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홈리스 당사자들도 그 보호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한 긴급구제 결정을 통하여 진정한과 피진정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서류

1. 위임장 1부

2020. 3. 9.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 관련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할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할 및 자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할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5. 노숙인 등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노숙인 등을 폭행·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26조(벌칙) ①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 ②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2. 11.>
- ③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2. 11.>
- ④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 ⑤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①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입소시설의 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소·퇴소 심사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노숙인 등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소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9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사. 노숙인 등의 입·퇴소

2)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퇴소의 기준

- 입소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을 파악하여야 함

○.퇴소의 방법

- 자진·무단퇴소 또는 사망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 또는 퇴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퇴소·사망 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퇴소심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소할 수 있음

퇴소의 절차

- 퇴소심사를 거치는 경우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입소시설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심사요청

(입소시설의 장) → 퇴소심사(입소·퇴소심사위원회) → 퇴소

☞ 입소시설의 장은 입소한 노숙인 등 및 그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노숙인 등을 퇴소시켜야 함
- 퇴소심사 시 인권보호 관련사항 준수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 준수 안내(자립지원과-5882호, 2018.10.24.) 참조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매뉴얼(종사자용)

V.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 보장

3)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종사자는 생활인의 자발적 퇴소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로 퇴소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생활인과 법정보호자에게 퇴소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생활인과 법정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시설 측의 요구로 생활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도 생활인이 퇴소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소하는 생활인이 퇴소하는 날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퇴소를 이유로 다른 생활인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인이 퇴소와 관련된 부당성을 호소하고 권리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절차와 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붙임 2>

발언 3 참조자료_현행 노숙인 급식지원, 의료지원 실태

1. 노숙인 의료지원 실태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 ②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노숙인 1종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만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16p)하도록 정하고 있음.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메우도록 한 것.

<노숙인1종 의료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전국	서울	경기 (수원)	전국	서울	경기 (수원)
903	888	7	701	692	3	604	591	8	502	489	8

자료: 의료급여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년도

의료급여수급자는 2015년 903명으로 정점 찍은 후 지속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노숙인1종의료급여수급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경기,충남,전북의 6개 지자체에 불과, 이중 97.4%가 서울지역 수급자임.

노숙인1종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를 제공하는 노숙인 진료소는 증가추세로, 제도시행 원년인 2012년 225개소에서 2018년 현재 267개소로 확대됨. 그러나 이들 중 211개소는 보건소(보건지소 포함)로 병원급 이상 진료기관은 39개소, 요양병원은 전국 3개소(충남,경기,전북)에 불과함. 노숙인진료시설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정되다보니 메르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공공병원이 치료의 거점이 될 때 이들 병원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흠리스들의 진료공백은 필연적임.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이 가장 많은 서울도 9개 진료시설(병원, 종합병원) 중 5개소가 기존환자가 아닌 초진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거나 입원을 제한하고 있음. 수원의 경우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은 단 1개소(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뿐이나,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초진 및 외래진료가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의료급여제도의 빈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지원이 메워야 하는 구조나 지자체들의 예산 편성,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수준은 제각각임. M시설이 속한 경기도는 노숙인시설 현원 당 예산을 배치하는 방식임. 그러나 쪽방과 고시원 생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지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설 퇴소는 곧 의료지원의 중단을 의미함.

<지자체별 노숙인 등 의료보호 사업 예산 편성 방식>

(2017년 6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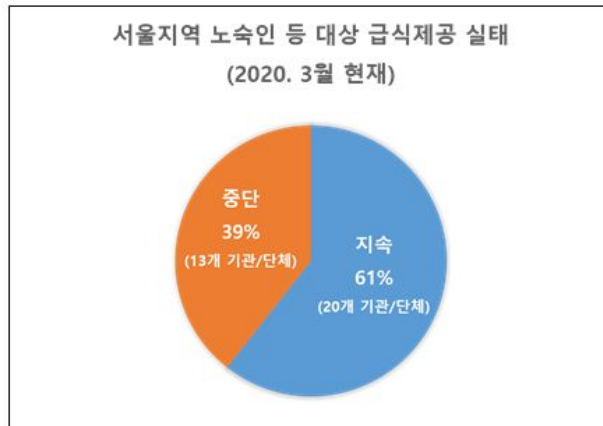
구분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 등 기타
		자활	재활		
서울	노숙인 의료비로 편성				
부산	시 자체예산편성 후 부산의료원 지급	-	-	-	-
대구	일시보호시설별 예산 배정	입소 현원별 예산 배정	입소 현원별 예산 배정	쪽방상당소 별 예산 배정	-
인천	-	시설 정원별 예산 배정	-	-	-
광주	없음	입소 현원별 예산 배정	입소 현원별 예산 배정	-	-
대전	입소정원별 예산배정	입소 정원별 예산 배정	원내 생활인 기준	-	-
울산	노숙인시설을 통해 가능	입소 정원별 예산 배정	-	-	-
세종	-	-	-	-	-
경기	종합지원센터별 예산 배정	입소 현원 별 예산 배정	입소 현원 별 예산 배정	없음	없음
강원	※ 의료급여사업은 지급유형별(노숙인 등)로 편성되지 않고, 진료내역(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별로 일괄편성				
충북	-	-	-	-	-
충남	-	-	-	-	-
전북	행려자관리 의료 및 구료비 별도 편성	-	-	-	-
전남	-	-	입소 현원별 예산	-	-
경북	-	-	-	-	-
경남	-				
제주	-	-	재활시설 별 의약품비 배정	-	-

자료: 윤소하의원실 요구자료제출,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2017.8.30

2. 노숙인 급식지원 실태 (서울시)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 보도들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전연 다루지 못하고 있음. 사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이미 수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드러난 바 있음. ‘노숙인 등’에 대한 급식지원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현행 공적 급식지원 시스템이 지닌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신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무료급식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임.

홈리스행동은 서울지역 내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행정안전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서울시), 2020 예산서(서울시), 운소하의원실 요구자료제출(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017년 8월 30일자) 등의 자료를 활용, 노숙인 및 극빈자를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부를 중심으로 급식중단 여부 확인을 위한 유·무선 조사를 시행함(조사시점: 3월 현재)



<지원 유형별 노숙인 등 대상 급식제공 실태 (2020. 3월 현재)>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지원 (교회, 비영리단체 등)	공적 지원 (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
급식 지속	12 (48.0%)	8 (100.0%)
급식 중단	13 (52.0%)	0 (0.0%)
합계	25 (100.0%)	8 (100.0%)

브리짓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본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 프로그램을 중단하여 운영중입니다.
이용자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료 급식 서비스, 취침 서비스, 위생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을 방문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체온 검사**와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검사



마스크

▲ 급식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
음을 알리는 서울시립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브리짓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최종확
인일자-2020년 3월 9일)

전체 조사대상 중 3월 현재 급식중단 여부가 확인된 기관·단체는 모두 **33개**.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을 중단한 기관·단체는 **13개(39.4%)**로 모두 민간기관·단체. 반면, 급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20개(60.6%)**. 이 중 **8개** 기관은 서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시비로 운영 중인
노숙인 지원기관(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실내급식장 1개소). 즉, 공적
급식지원은 전혀 중단되지 않은 상황임

급식제공 중인 기관/단체 중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현황 (2020년 2월 기준)



<급식제공 기관/단체 중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현황 (2020. 3월 현재)>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지원 (교회, 비영리단체 등)	공적 지원 (서울시 노숙인 지원기관)
집단급식소 신고	1 (12.5%)	3 (37.5%)
집단급식소 미신고	7 (87.5%)	4 (57.1%)
합계	8 (100.0%)	7 (100%)

*자료: 2020 예산서(서울시), 서울시 자치구별 집단급식소·식품위생업소 현황(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0년 2월 기준)

**주: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5개소는 제외하였음.

서울시 공적 노숙인 급식지원 기관 현황 (2020년 3월 현재)

기관명	노숙인 기관 유형	소재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1일 식사제공 횟수 (인당 예산액)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용산구	○	1일 1식 (2,500원)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	1일 1식 (2,500원)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	1일 1식 (2,500원)
인정복지관만나샘	일시보호시설	용산구	×	1일 1식 (2,500원)
디딤센터(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	서대문구	신고대상 아님 (예산서 기준)	1일 3식 (2,500원)
햇실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영등포구	×	1일 1식 (2,500원)
용달샘드롭인센터	일시보호시설	영등포구	×	1일 1식 (2,500원)
시립 따스한채움터 (서울역 실내급식장)	-	용산구	×	1일 3식 (2,500원)

*자료: 2019 노숙인 등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0 예산서(서울시), 서울시 자치구별 집단급식소·식품위생업소 현황(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0년 2월 기준)

**주: 시립 따스한채움터는 2010년 서울시가 설립한 노숙인 실내급식장으로, 교회와 법인 등 민간단체에 급식제공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그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된 상태를 유지해 왔음. 설립 10년이 된 올해 서울시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위해 영양사 1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

급식을 중단하지 않은 20개 단체·기관 가운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신고 돼 있는 기관은 2020년 2월 기준 모두 4곳으로, 이 중 3곳이 서울시가 위탁운영 중인 공적 급식지원 기관임. 이는 위생관리는 물론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급식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으로, 공적 급식지원 기관 중에서도 미신고 집단급식소가 상당하다는 것은 그간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 급식지원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줌.

결론적으로, 이상의 조사결과는 공적 급식지원체계 확대 및 개선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시혜와 자선에 기반을 둔 민간 지원기관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급식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급식의 질은 물론 방역 등의 위생관리에 진력할 역량이 없기 때문. 문제는 공적 급식지원기관의 수가 너무 적고 몇몇 지역에 한정돼 있어 현재 같이 민간 지원체계가 멈출 경우 그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 △공적 급식지원기관의 수를 늘리고, △합법적인 급식소 운영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며, △권역별로 공적 급식소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무료급식 대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음.